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갱신 시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을 한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다. 장기요양대상자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할 수있다.
- 라.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마.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바.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고 기록에 대해 확인하여 서명이나 그것에 준하는 표를 해 주어야한다.

③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A.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C.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E.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 A.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B.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C.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D.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제

계약 해지 사항-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 한다

5.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각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① 장기요양인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기간, 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 체결에 따른 고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을 받는다.

④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한다.

⑦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인부담비율

	공단부담금(시군구 지원포함)	본인부담금
일반	85%	15%
경감대상자	94%	6%
	91%	9%
기초수급자	100%	0%
자부담신청자	0%	100%

8.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서비스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사업내용
방문 요양	1) 신체활동서비스 2)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3) 가사지원 서비스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하기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신체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프로그램,사회적응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재활프로그램, 간호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비용

《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 금액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이상	17,450 원
가-2	60분 이상	25,320 원
가-3	90분 이상	34,120 원
가-4	120분 이상	43,430 원
가-5	150분 이상	50,640 원
가-6	180분 이상	57,020 원
가-7	210분 이상	63,530 원
가-8	240분 이상	70,080 원

《 방문목욕서비스 이용 금액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원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금액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미만	33,460 원	30,980 원	28,590 원	27,300 원	25,990 원	25,99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원	38,720 원	35,740 원	34,120 원	32,490 원	32,49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원	51,930 원	47,940 원	46,300 원	44,650 원	44,65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원	64,590 원	59,640 원	58,010 원	56,360 원	56,36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원	71,160 원	65,750 원	64,090 원	62,460 원	56,360 원
13시간 초과	82,370 원	76,310 원	70,500 원	68,860 원	67,240 원	56,360 원
가족휴가 12시간미만	37,030 원	34,290 원	31,680 원	30,840 원	30,000 원	30,000 원
가족휴가 12시간이상	74,060 원	68,580 원	63,350 원	61,680 원	60,000 원	60,000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